

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의 이데올로기적 영향과 변화

오춘영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소장

Corresponding Author : adagio@korea.kr

국문 초록

문화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재 '선택'에는 당시 지배 권력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이를 20세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대한제국 후기(1901~1910)에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오던 과거 유적들에 대한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려 한 대상은 왕릉과 왕실기록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유적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인들 주도로 문화재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 지정, 보호, 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애호 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1945~2000)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문화재 복구와 복원 활동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문화유산 현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선택에 따라 문화재의 내용이 변하였다.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런 문화재 선택의 배경에는 개념어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집단에 각인시키려 하는데, 그 수단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I. 머리말

문화재(文化財)는 과거의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공공(公共)의 장에 불러낸 것이다. 문화재가 공공의 장에 놓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공공의 시각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주도하는 공공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문화재가 될 수는 없으므로, 문화재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선택'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선택의 과정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데, 이때 국가의 관점이 투영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과거에 대해 가지는 생각 또는 이데올로기가 과거의 것을 문화재로 불러내는데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가령 문화재가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화재 구성과 이데올로기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 문화재 인식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문화재는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그 시작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근대 시기 거의 모든 제도들이 일제의 권력에 의해 제정 및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문화재 관련 제도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 진행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관련법을 거의 그대로 운용하였고,² 일

제강점기에 지정한 문화재 목록 또한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으며,³ 1962년에 한국에서 처음 제정한 문화재보호법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인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문화재 기본 체계에 관한 일본의 영향은 한국 국민의 문화재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어쩌면 타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지난 20세기 동안 문화재 인식의 변화사를 본질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기로 하는 의미도 있다.

시작의 타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문화재 보호'는 민족 주체성을 강화하는 당위적 명제이다. 문화재 정책의 방향은 보호에서 활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대전제를 '보호'로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당연하게도 문화재에 관한 기본법은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명제는 '문화재는 소중하다'이다.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왜 소중한 것인가. 스스로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 소중하다고 규정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풀어 보고자 한다.

지난 20세기는 한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드라마틱한 백년이었다. 전통 왕조의 마지막과 반식민지, 식민지, 해방과 이데올로기 대립, 전쟁과 재건, 두 체제의 대립과 발전 등 드라마로 담아내기도 어려운 큰 사건들이 한반도에서 백 년 동안 일어났다. 한국의 현대적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근현대에 이르러 압축적으로 변화·발전한 것처럼 문화재에 관한 인식의 경향도 근

1 이데올로기는 이념과 같은 의미로 여겨질 수 있으나, 아래에서 정의되는 바에 따라 이념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이 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 용어를 쓰고자 한다.

〈이데올로기/이념 정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2020.6.30.>)〉

이데올로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이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2 1948년 남한 단독 정부의 제헌 헌법 제100조(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제도가 해방된 한반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문화재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일제강점기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전까지 「한국國 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으로 그대로 유지, 시행되었다.

3 문화공보부, 1953, 『韓國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目錄』.

4 吳世卓, 1982, 「文化財保護法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行政法專攻 博士學位論文.

현대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형성과 변화가 있었다. 20세기는 이렇게 전통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압축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문화재를 알고 공유하지만, 불과 백년 전만 해도 문화재라는 단어는 공식의 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래된 것들에 대한 경외심이나 보호 활동들은 전근대 시대에도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으나,⁵ 지금과는 많이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근현대에 주로 형성되었지만, 그 이전에 유사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옛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식민지 정책과 함께 일본에 의해 주도된 인식으로 문화재에 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문화재 인식의 변화에는 당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기반한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이 이 글의 기본 전제이며,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역사의 변화·발전과 함께한 문화재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문화재 개념에 관한 기초적 정의와 집단의 기억으로서 문화재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해 먼저 살펴본 후 이에 기반하여 20세기 문화재 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화재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문화재가 왜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는가를 정리해야 이에 기초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문화재 인식의 기초적 검토

1. 문화재의 정의 문제

사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문화

재 정의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의 정의가 20세기 문화재 인식 변화를 통사적으로 살펴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물(寶物)이나 고적(古蹟) 등을 끌어서 하나의 집합 단수 대명사로 인식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의 일반화와 공식화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후반기에야 이루어진다. 20세기 전반기에는 보물이나 고적 등이 각각 별도의 분류 하에 지칭되었는데, 이 개념들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재 인식의 시작을 20세기 후반기로 볼 것인가, 고적의 사용 예가 보이는 조선시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보물을 기준으로 하면 더 복잡해진다. 이런 예들을 보면, 문화재를 본질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가 제기된다.

문화재 정의에 대해서는 20세기 초 「아테네 협정(Athens Charter for the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1931년)」에서 「베니스 협정(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4년)」으로 이어지며 형성된 문화재에 관한 정의와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을 그 기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⁶ 현재 여러 국가들의 문화재 정의가 이와 같은 국제 협약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으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20세기에 형성된 국제 협약의 정의들을 문화재 정의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다.

그런데 전근대 시기에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나 보호 의식은 전혀 없었을까. 당대의 건축물이 아님에도, 또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형태를 유지하며 천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킨 첨성대와 같은 건축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화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려면 현재의 정의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인식도 미래의 인식도

⁵ 필자는 오래된 것을 남기고 보호하고 선양하고자 하는 문화재의 본질적 특성은 근대 이전 시기에도 있었다고 보았다. (오춘영, 2020.2, 「韓國 近代‘文化財’認識의 形成과 變容」,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5~54.).

⁶ 심주아, 2016.2, 「이코모스 협정의 문화유산 개념 및 보존원칙의 변화와 그 의미 - 베니스 협정을 중심으로」, 韓國傳統文化大學校 文化遺產融合大學院 修理復原學科 文化財復原專攻 碩士學位論文.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적 검토이다. 현재의 정의(대상적 정의)와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의(조건적 정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대상적 정의

현재 문화재에 관한 정의는 ‘무엇을 문화재라고 한다’라는 대상 중심의 정의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문화재란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⁷나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법률적 정의⁸와 같은 것들이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문화재 정의도 우리나라의 법률적 정의와 그 기본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적 정의에는 지시 대상에 대한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 활동’이나 ‘사물’의 범주에 들어 가지 않더라도 문화재로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문화재 정의로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법률적 정의에는 우리가 현재 문화재로 인식하는 거의 모든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재의 정의로 논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 법률적 정의는 현재 시점에 우리 사회가 문화재라고 간주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현재라는 시점을 벗어나면 과거나 미래에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건적 정의

위와 같은 문화재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화재 인식의 통시적 변화상을 추적하려면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다른 차원의 정의가 필요하다. 문화재에 관해 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필자는 그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의(定義)를 따로 정리하였다.⁹ 이 정의는 어떤 조건들이 문화재를 형성하는지, 바꿔 말하면 어떤 조건들이 특정 대상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데 필수적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앞의 ‘대상적 정의’와 대별하여 ‘조건적 정의’로 지칭하며, 이렇게 정리한 조건적 문화재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 집단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명사적 개념으로 선별하고 보호하는 대상’

대상적 정의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요소가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문화재에 대한 정의가 변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며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간, 즉 지역에 따라서도 문화재가 다르게 정의된다. 한국에서는 문화재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문화재가 되지 않으며, 한국의 문화재가 모두 세계의 문화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정의된 문화재는 그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지만, 사회적 정의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바뀌면서 정의가 내려지는 대상은 변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그 대상에 추가되는 추세이다.

반면 조건적 정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며 그 핵심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좀 더 본질적인 정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가지는 조건 중심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어떤 대상들

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020.6.30.).

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0.6.30.).

⁹ 오춘영, 2019.6, 「개념사적 관점에서 본 ‘문화재(文化財)’ 개념의 특성과 정의」, 『2019년도 호서사학회 전반기 학술대회』 pp.75~104.

이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살펴 보면 문화재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조건적 정의에 어떤 대상들이 반영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문화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본 뼈대는 조건적 정의로 한다.

조건적 정의를 문화재 인식의 기본으로 하면 문화재 인식의 시기적 폭을 넓게 잡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고적(古蹟)’이 문화재에 포함된다.

문화재 인식의 역사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의 고적 조사나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용어의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고적(古蹟)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발간 및 배포 시기부터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고적에 관한 문화재적 인식과 보호 활동은 조선시대에 드물지 않게 있었다.¹⁰ 그리고 전통적으로 옛 유적이나 유물을 고적으로 통칭하던 인식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비슷했기 때문에, 옛 유적을 고적으로 부르는 인식은 20세기 전반기까지는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는 195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법률적 용어로 공식 사용되었다. 용어의 사용 예를 기준으로 문화재 인식의 역사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많다.

용어의 사용 예를 제외하고 근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재 인식의 역사를 근대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대적 인식이 과연 본질적 인식

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역사학을 예로 들면, 19세기 말 최초의 근대적 한국 사인 『조선사(朝鮮史)』를 저술한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이후의 역사학만이 역사학인가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술사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근대 학문으로 미술사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술품을 고찰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미술사의 역사가 한국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와 같다.

고적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이며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조차 1950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보면 문화재 인식의 역사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건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조선시대에 인식했던 고적 역시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재와 같은 보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현재의 ‘보호제도’를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시각이다. 현재를 절대적 준거로 보는 시각의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문화재 정의’ 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굳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적이 국가 차원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점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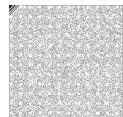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를 좀 더 본질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문화재 인식의 역사를 폭넓게 잡을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인식과 활용의 변화상을 살펴보기가 수월하다고 본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단어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개념사(概念史)적 관점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다. 개념어는 시대 인식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시대 인식을 유도한다는 논리가 개념사의 핵심적 이론이다.¹²

¹⁰ 오춘영, 2020.2, 앞의 논문, pp.15~54.

¹¹ 오춘영, 2020.2, 앞의 논문, pp.24~28.

¹²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어의 변화가 근대인들의 진보적 의식 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사학의 선구자로 독일의 라인하르트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2006)이 유명하며, 이런 개념사의 세계적 연구를 나인호가 국내에 소개하여 개념사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개념사적인 관점을 차용하여 20세기 문화재를 이해하자면, 문화재는 변화하는 각 시기 통치권력이 가진 이데올로기가 관여하여 선택된 과거 기억의 증거물이며, 이는 각 시대마다 다르게 과거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유도하였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다음 Ⅲ장에서 진행한다.

2. 문화재 선택의 배경 - 집합기억과 이데올로기

앞서 살펴본 문화재의 정의가 문화재 인식과 구성의 표면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라면, 기억과 이데올로기는 문화재 인식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어떻게’의 문제이며, 기억과 이데올로기는 ‘왜’의 문제이다.

문화재를 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는가에 대하여, 문화재와 관련된 ‘집합기억’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다. 집합기억은 문화재와 이데올로기를 이어주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과거 기억의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억 행위와 관련이 깊다. 이 기억 행위는 개인적 기억이 아닌 집단의 기억이다. 또한 기억은 과거 전체의 재생이 아닌 ‘선택’에 의한 재생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단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집단적 기억 선택의 과정에서 집단의 과거에 대한 관점, 사상이 투영된다.

집단의 기억은 집단을 이끌어가는 주체에 의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기억(혹은 집합기억) 측면에서 이 기억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본다면, 문화재가 형성하는 사회적 현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문제를 최초로 연구

한 모리스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우리의 과거관이 현재적 문제 해결의 욕구로써 채색되며 집합기억은 본질적으로 현재적 고려에 준거한 과거의 재구성임을 강조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집합기억은 하나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실천이면서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³ 집단적 차원의 기억 문제가 이데올로기적임을 논증한 것이다.

또한 집합기억은 반영적(사회적 모델) 측면과 조형적(사회를 위한 모델) 측면을 드러낸다고 하는데,¹⁴ 이를 통해 기억의 증거물인 문화재 인식이 당대의 인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기억의 특성이 정치 권력이 문화재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활용한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문화재와 관련하여 ‘집단’이 왜 기억에 관여하는가, 또는 관여하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150년 전 프랑스에서도 논쟁이었다. 1871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파리 방돔(Vendôme) 광장 원주(圓柱)의 파괴와 복원에 관한 논쟁은 정치 집단이 어떻게 기념물에 관여하려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⁵ 콜럼버스(Columbus, Christopher, 1451~1506)와 같이 과거의 동일한 문화적 객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집단의 다른 기억과 해석 사례는 미국에서도 있었다.¹⁶

집합기억이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면, 과거 기억의 표상인 문화재 또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 권력은 집합기억의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여 과거 기억의 표상인 문화재를 그들의 뜻에 따라 규정하고 보호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건적 정의와 이데올로

13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사회과학연구』, 大邱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pp.584~587.

14 김영범, 1999, 앞의 논문, p.590.

15 최호근·민유기·윤영희 옮김, 매트 마쓰다(Matt K. Matsuda), 2006, 「황제의 우상: 나폴레옹 승전 기념비에 대한 프랑스인의 기억 변화」『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110~119.

16 최호근·민유기·윤영희 옮김, 린 스플만(Lyn Spillman), 2006, 「언제 집단기억이 지속되는가?: 미국과 호주의 건국의 순간들」『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194~199.

기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III. 20세기 문화재 인식의 이데올로기적 영향과 변화

1. 1기: 1901~1910년

20세기는 혼돈 속에서 시작되었다. 500년 가까이 버텨온 전통 왕조가 조선(朝鮮)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호를 바꾸며 근대적 전제군주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내외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의 자주적 근대화는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옛 것들에 대한 인식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다. 조선은 국호를 바꾸며 근대화의 길로 가는 변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거의 모든 사회 문화는 조선의 전통을 이어온 바탕 위에 있었다.

문화재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부터 1910년까지는 전통적인 문화재 인식의 흐름과 외래적인 문화재 인식의 흐름이 함께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전통적인 문화재 인식은 다시 왕실의 측면과 일반 사회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왕실의 측면을 보면, 조선 왕실은 전통적으로 나름의 문화재 인식과 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왕릉이나 왕실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호 제도는 문화재 인식과 보호의 역사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왕릉이나 왕실 기록물이 통치 권력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은 이것들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실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왕릉이나 왕실 기록물은 고적이나 문화재와 같은 별도의 집합 단수 대명사로 불리진 않았으

나, 이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고도화된 문화재 보호제도를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실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인식과 보호의 전통적인 문화 외에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인식 기회도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세기 말에 조선 왕실이 주도하여 깊은 관리들을 외국에 보냈다. 이들은 외국에서 박물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조선 사회에 적용토록 할 기회가 있었으나,¹⁸ 조선의 깊은 관리들이나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문화재 체계가 큰 관심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의 문화재에 관한 지식은 조선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전통적 유교문화를 국가의 근간으로 유지하려던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외국의 박물관이나 문화재처럼 과거의 상징물들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한 것들을 굳이 조선 사회에 적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음 일반 사회 측면에서는 고적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들 수 있다. 고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6세기 이후 별도의 독립적 인식 대상으로 조선 사회에 확산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고적은 조선 후기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난 지리지(地理志), 특히 지방지(地方志)를 중심으로 계속 수록되고 있었다. 이들 지리지 중 고적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종전의 지리지 편찬 체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적이 지리지의 항목으로 포함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지방의 지리지¹⁹에서도 확인되므로, 고적은 거의 400여 년 동안 조선 사회에서 과거의 유적을 인식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고적에 관한 인식 문화가 형식적으로는 조선시대 아래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7 오춘영, 2020.2, 앞의 논문, pp.20~29.

18 19세기 말 『西遊見聞』을 쓴 유길준이나 『美行日記』를 쓴 박정양은 각각 서양의 박물관에 대한 기록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간략한 기행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물관을 구성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선에 적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특히 『西遊見聞』의 박물관 편은 후쿠자와유키치의 『西洋事情』을 거의 그대로 옮겼음이 확인된다.

19 예를 들면 1928년에 편찬된 『扶餘誌』와 같은 것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2020.6.30.).



외래적 문화재 인식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본인들의 고적 조사였다.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건, 인접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었던 간에 일본인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조선의 고적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했다.²⁰ 서양인들의 인식은 기행문에 언급되거나 골동품 수집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므로,²¹ 당시 한국의 문화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조직적으로 한국의 고적을 조사하고 기록한 일본인들의 경우는 다르다.

1900년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고적 조사를 한 야기쇼자부로(八木樊三郎)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동경제국대학의 명령으로 1900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온 후 이듬해 3월 1일까지 머무르며 각지의 고적을 조사하였다.²² 또한 1902년 대한제국 정부가 세키노타다시(關野貞)의 고적 조사 편의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 군수에게 보냈다는 점²³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인 학자에게 가졌던 인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²⁴

고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 자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규모 조사에 자극을 받으며 통감부 체제 하에서 국운의 쇠락함을 느낀 한국의 계몽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자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족사(民族史)를 강조하는 각종 논설에서 역사의 증거로 남은 고적들을 살폈으며, 1909년에는 <황성 신문(皇城新聞)>에 지금의 문화재와 같은 별도의 집합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문화 자산을 72회에 걸쳐 소개하는 연재를 하였다.²⁵ 당시 계몽 지식인들이 전국의 문화 자산 소개에 사용한 집합 단수 대명사는 ‘명소고적(名所古蹟)’이었다.²⁶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체적이고 근대적 인 문화재 인식 사례로 볼 수 있다.

1900년에서 1910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전통 왕조의 물질과 외세의 강점, 근대화의 진행이라는 혼란 속에서 전통 문화 혹은 문화 자산은 일본인들에 의해 새롭게 조사되거나 재단되며 이후 제도화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일제의 강점 직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무너지면서 유교에 기반한 왕조가 중요하게 여겼던 왕릉이나 왕실 상징물들은 중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사학을, 우리 계몽 지식인들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문화 자산을 과거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였다.

2. 2기: 1910~1945년

일제강점기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제도의 원형(原型)이 형성된 시기이다.²⁷ 강점 초기에 일본은 피지배 지역의 지배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식민지에 펼치는데, 제도화에 앞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²⁰ 한국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는 고적 조사가 조선의 경우 만큼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았다.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文化財』, 국립문화재연구소, pp.259~261.).

²¹ 오춘영, 2020, 2, 앞의 논문.

²²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 「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p.172.

²³ 정규홍, 2005,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pp.56~57

²⁴ 당시 왕실에서 문화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보호 대상은 왕릉이나 왕실 상징물들이었으므로, 전국 각지의 고적은 왕실의 명시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왕실의 관심 밖에 있던 전국 각지의 고적을 일본인이 조사하는 일에 조선 왕실이 거부가 아닌 협력의 입장을 취했던 것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²⁵ 오춘영, 2019, 3, 「대한제국기 문화재 개념과 인식」『한국사연구회 제321차 월례연구발표회』, 한국사연구회, p.90.

²⁶ 이 명소 고적은 1919년 大韓民國 臨時政府官制에도 사용되어 문화재를 지칭하는 집합 단수 대명사로 사용되었지만, 두 경우 모두 한국 땅에서 실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²⁷ 金鐘洙, 2019,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忠南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韓國史專攻 博士學位 論文.

것이 대표적 체계이다. 그 예로 ‘토지 조사(土地調查)’, ‘관습 조사(慣習調查)’, ‘고적 조사(古蹟調查)’ 등이 있다. 이런 조사들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근거가 되었다. 토지 조사로 일본인 대지주들을 양성하였고, 고적 조사로 식민주의 사관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문화재 정책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제정을 기준으로 전후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조사 정책 시기이고, 후자는 보호 정책 시기이다.²⁸ 이는 앞서 말한 조사 후 제도화의 일반적 체계와 같다.

조사 정책 시기에는 강점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진행 하던 고적 조사를 조선총독부 주도로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1909년~1911년 세키노타다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1916년에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적 고적 조사 사업을 다시 벌였고, 1917년에 목록이 작성되었다. 고적 조사는 일제강점기 내내 진행되었으나, 1917년에 작성된 목록이 기초가 되어 1934년에 첫 지정문화재 목록이 작성되었다.²⁹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는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사라는 점에서부터 이 조사의 정책적 성격이 드러난다. 당시 조사는 타율적 역사관과 임나일본부설, 신공왕후정벌설 등을 증명하는 낙랑·가야·신라·백제 관련 고적 조사에 집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고 식민사관을 증명할 수 있는 고적들이 정책적 조사 대상이었다.

고적 조사에는 강점 이전부터 조사를 했던 학자들이 강점 후에도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세키

노타다시(關野貞), 이마니시류(今西龍), 구로이타가쓰미(黒板勝美), 도리이류조(鳥居龍藏) 등이 있다.

보호 정책 시기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제정으로 시작한다. 이 법령은 기준에 있었던 일본과 대만의 법령 체계를 이어받은 것인데,³⁰ 여기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지정한 문화재는 대만의 경우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약하지만, 왜성과 같은 일본 관련 유적이나 낙랑 유적과 같은 식민사관을 증명하는 유적을 지정했다는 점과 일제 말기 전쟁을 위한 지정문화재 해제라는 사례³¹를 보면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책 역시 식민지 경영이라는 정치적 전제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 정책 시기에는 문화재가 그 전 시기보다 정책적 홍보 도구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조선고적도보를 조선총독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한 일은 유명하며, 고적애호데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일은 문화재가 내선일체라는 식민지 정책의 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한다.³² 고적애호데이는 당시 동아일보 등을 중심으로 한국내 계몽적 민족 지식인들에게도 선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낙랑 유적 등으로 일제의 고적 조사 성과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식민사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은 일본 본토의 문화재 정책이 주 모델이 되었다. 메이지 초기에 형성된 일본의 문화재 정책은 천황제 강화와 세계 박람회와 같은 행사에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면이 강하다.³³ 이렇게 정치 권력에 의해 주도된 문화재 정책은 식민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문화재 정책³⁴을 형성해

²⁸ 金志宣,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²⁹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文化財』 51-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111.

³⁰ 오춘영, 2020.2, 앞의 논문, p.105.

³¹ 이현일·이명희, 2014,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美術資料』 85, 국립중앙박물관, pp.107~109.

³² 김지선, 2008, 앞의 논문, p.39.

³³ 김용철, 2017,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미술자료』 92, 국립중앙박물관.



갔고, 이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과 보호운동도 있었다. ‘이충무공 위토보존운동’, ‘단군 성지순례와 수축운동’, ‘개벽사의 조선문화 기본조사’, ‘개인적 차원의 보호활동’ 등이 있는데,³⁵ 이 활동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에 문화재 보호를 지방국(地方局)의 사무로 규정하는 법령³⁶을 발표하였으나, 이 조항은 이후 임시정부 관계에서 사라졌고, 제정 당시에도 실효성은 가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이 문화재의 선정에 정치적 고려를 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는 대만(臺灣)에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대만에서 일본은 조선의 경우보다 고적 조사의 규모는 작았지만, 지정문화재 중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문화재의 비율은 훨씬 커다. 대만총독부가 대만에서 지정한 사적 31건 중 일본군의 전승지와 같은 당대의 정치적 유적이 15건이나 되었다는 점은 그들이 문화재의 지정에 정치적 고려를 크게 했음을 보여준다.³⁷

일제강점기 동안 문화재는 국내건 국외건, 일본인이 건 한국인이 건 간에 그들의 문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증거들이었다. 식민주의 사관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거나, 민족주의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문화재가 선택되고 활용되었다.

3. 3기: 1945~1960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민족 정체성 회복이었다. 민족 소멸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는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 남과 북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였다. 남과 북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가던 1949년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남북 각각의 통치 세력 시각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 고적 보존에 대하여(1949)³⁸

누대(累代) 궁실 사찰 등은 가장 우리의 특색을 이어서 고대문명의 발전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으나 일본이 우리를 속박한 이후로 우리의 기왕 건물은 다 퇴락파손(頽落破損)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고대문명을 다 이저버리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통분히 여기는 것은 지금 중앙청(中央廳)이라는 것을 하필 경복궁(景福宮)의 신성한 기지(基地)를 쓰고 광화문(光化門)을 옮기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워 경복궁 설계를 다 파손시켜 놓았으니, 우리가 그 악독한 심정을 볼수록 가통(可痛)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³⁴ 법령의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도 관 주도의 의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회장은 조선총독부의 2인자인 정무총감이었고, 위원으로 임명된 관료의 숫자가 과반을 넘기도 했다.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文化財』51-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³⁵ 오춘영, 2020.2, 앞의 논문, pp.142~148.

³⁶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法律第二號「大韓民國臨時官制」(1919.11.5)

第二節 內務部

第一條 內務總長은 憲政籌備 議員選舉 地方自治 警察 衛生 農商 工務와 宗教慈善에 關한 一切 事務를 統轄함

第二條 內務部에는 祕書 地方 警務 農商工局의 四局을 置함

第三條 내용 생략

第四條 地方局은 左開事務를 掌理함

—. ~ 七. 내용 생략/八. 名所古跡 保存에 關한 事項/ 九. 내용 생략.

³⁷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文化財』51-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262.

³⁸ 공보처, 1953, 『대통령이승만박사답화집』(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기록콘텐츠/연설기록/고적(古蹟)보존에 대하여, <http://www.pa.go.kr.2020.6.30.>).

외적의 압박 하에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은 지금 몇 가지 부지(扶持)해 있는데, 그 건물이 원체 견고히 된 연고이요, 또 어떤 것은 애국정신을 가진 남녀들의 모험정신으로 부지했던 공효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문화를 상통하고 사상을 교환하여오는 이때에 우리의 특색인 몇백년, 혹은 몇 천년 나려오는 유적은 부강발전한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교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소관 각처를 일일히 조사하여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 착수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에 요청해서 곧 관민 합작으로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므로서 거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귀중한 고적을 보유하여 우리의 후생에 유전(遺傳) 하여 세계 모든 우방들에게 구경시켜야 할 것이다 일편으로 반란 분자들의 파괴운동을 방지하여 건축 건설에 더욱 힘써 부여족속(扶餘族屬)의 빛나는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굳굳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북:『조선중앙년감』(1949), p. 137³⁹

일제는 1933년 평양박물관을 신축하고 소위 그 날조적 『내선일체』의 자료와 중일전쟁시대의 현 누덕의 군복따위들을 나열하고 『대화훈』을 조선인민에게 강요하였으며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노예화하는 도구로 박물관 및 고적보존사업을 이용하였다.

오랜 역사를 지난 조선의 민족문화 탐구 및 계승사업이 30여년의 일제의 문화 폐멸정책으로 말미암아 친연한 민족적인 역사자료가 발굴계승되지 못했고 조선에는 단 한곳의 현재적인 시설의 역사박물관도 존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에 있어서의 고적보존 및 발굴사업은 실로 문자 그대로 처녀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

러한 처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남과 북 모두 일본이 민족의 유산을 훼손한 일을 질타하며, 새로운 조사와 복원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남과 북 모두 사회의 근간에서부터 일본의 영향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다른 대부분의 사회 분야처럼 문화재 분야도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도와 지정문화재 목록, 박물관과 같은 사회 기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련 기본법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었는데, 남에서는 미군정의 군정법령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보존령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고,⁴⁰ 북에서는 1946년 4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량욱’의 명의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반포하였다.⁴¹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보존령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치적 환경은 달랐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 후 국민당 정부 주도로 일본색을 배격하고 나름의 「고물보존법(古物保存法)」을 시행⁴²한 대만의 경우와 다른 일들이었다.

1945년 독립 후 시작된 남과 북의 사회적 이데올로기 대립은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치를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가치보다 우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민족주의보다 우선시 된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여론 또한 있었으나,⁴³ 이는 해방 직후 짧시간의 상황이었고, 이내 진행된 남북 각각의 정부 수립과 이데올로기 대립은 모든 가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뒤에 서게 하였다. 이 대립의 정점은 한국

³⁹ 남보라, 『국가건설과정의 북한 문화유산 관리 연구 - 1945년~1956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석사학위논문(2015.6), pp.25~26.

⁴⁰ 金鐘洙, 2019, 앞의 논문, p.144.

⁴¹ 남보라, 2019, 「북한문화재 보호법제 변화와 최신 동향」『2019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p.20.

⁴² 林會承, 2011, 『臺灣文化資產保存史綱』, 台北:遠流, p.67.

⁴³ 金鐘洙, 2019, 앞의 논문, p.145.



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상징인 문화재들은 파괴되었다.

한국전쟁 중 파괴된 무수한 문화재들은 민족주의의 가치보다 남과 북 각각의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더 컸음을 증명한다.⁴⁴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문화재들은 남과 북 모두에서 시급한 복원의 대상이었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들지는 못했다. 1950년대까지 복구된 문화재로 남에서는 승례문, 광화문, 지팡국사탑의 응급 복구, 북에서는 개성 성균관, 숭양서원, 안악3호분, 공민왕릉, 전금문, 청류정, 대동문, 보통문, 부벽루 등의 복구나 수리가 있었다.⁴⁵

한국전쟁 후 북한에서 문화재는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 형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상이었다.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고고학 분야를 주도한 김용간이 ‘형식은 민족적이며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건전한 민족 문화 형성을 촉진하며 나아가서는 혁명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⁴⁶라고 한 말은 문화재가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국전쟁 후 남한에서 문화재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 회담에 따른 문화재 반환이다. 한일회담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미국적 자본주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미국의 강한 요구라는 배경 속에서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195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일본에 의한 피지배 기억을 가진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미국의 요구와 정권의 필요라는 배경 아래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정권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의 4개 부속 협정 중 하나로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포함되었고, 이는 이듬해 1,326점의 문화재 반환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⁴⁷ 이 협상 기간 중 1958년에는 창녕 교동고분군 출토유물 등 문화재 106점을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았다.⁴⁸ 한일협정 15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를 구축하려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후 남과 북의 문화재에 관한 인식으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살아 있는 정권 지도자의 우상화에 그들의 혼적이 문화재적 관점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김일성 우상화 사업에 관한 자료는 발굴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우상화가 완료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역시 문화재를 통한 개인 우상화를 시도하였다. 1958년에 편찬된 『서울 명소고적』에는 서울 시내의 유명한 유적을 망라하고 있는데, 곳곳에 이승만의 친필 현판 등 그의 혼적을 소개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리대통령동상(p.132)’, ‘리대통령송수탑(p.385)’과 같은 것들이 별도의 유적으로 등장한다.⁴⁹

독립 후 1950년대까지 문화재는 민족주의를 회복하는 혹은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극한의 정치적 대치 속에서 문화재는 보호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게 되었

⁴⁴ 국립고궁박물관, 2020.6.19,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⁴⁵ 장호수, 2020.6.19, 「전쟁과 문화유산-전후 복구와 문화유산 제 모습 찾기」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pp.50~54.

⁴⁶ 김용간, 1958, 「문화 유물 조사 보존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시책」 『문화유산』 1호, p.11.

⁴⁷ 협정문에서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일본인이 소유한 것을 자발적으로 기증(합의 의사록 문서)’한다거나, ‘인도(협정 문서)’한다는 식으로 하여 되돌려받는다는 의미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p.624, 625.), 문화재의 내용 또한 20세기 초에 사용했던 문서 용지(폐지)나 도장, 짚신 등이 포함되어(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pp.454~459.) 온전히 진정성 있는 ‘문화재’ 환수를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⁴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p.15.

⁴⁹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58, 『서울 명소고적』.

다. 전후의 문화재 역시 남북 각각의 정권에서 규정한 민족주의를 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구나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그 속도는 국가 재건에 밀려 더디게 진행되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⁵⁰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정 목록, 기반 시설은 일제강점기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겨를도 없이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후에도 그 전부터 있었던 문화재에 관한 사회적 토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독립 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물결에 휩싸여 큰 혼란이 있었고, 이 속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표상인 문화재는 정치적 사건의 부속물이 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주체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발현될 수 없었고, 민족주의와 관계가 깊은 문화재 역시 종전의 관리 체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4. 4기: 1960~2000년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와 함께 형성된 문화적 여유와 국가와 민족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⁵¹ 속에 1957년~1959년에는 미국에서 '한국고대문화전'을 열었고, 1958년에는 한일회담 중 일본으로부터 '장녕교동고분군 출토품'과 같은 문화재를 반환받았다. 이런 일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국가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0년 8월 15일에는 김원룡, 진홍섭 등 국내 고고미술 분야를 선도하는 학자들이 참여하며 '考古美術同人會'를 결성하였다. 1950년대 말 진행된 이런 일들은 정부가 문화재 전담 정부 조직과 관련 법을

제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은 한국의 문화재 보호 행정이 본궤도에 이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정이 주체적 문화재 인식에 근거한 자발적인 보호운동의 결과기 보다는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령 폐지 시효에 이끌린 다급한 상황⁵²이었다는 점 때문에 독자적 문화재 관련 법 제정은 어려웠고, 1950년에 이미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거의 그대로 베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화재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임에도 그 법 체계를 반민족적인 대상의 것을 옮겨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법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라는 화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표방하며 민족문화 관련 정책⁵³을 펼치려 한 박정희 정부에는 중요한 이슈였다. 박정희는 문화재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 중요 유적 발굴과 사적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는 문화재 수리업자들에게 있어서 소위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 보수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⁵⁴ 문화재 보수뿐만 아니라, 중요 유적에 대한 대대적 발굴도 이루어져 유명한 경주 황남대총, 황룡사지와 같은 유적이 이 시기에 발굴되었다. 박정희가 발굴 현장을 직접 수 차례 방문하고 격려한 사실은 문화재 계에서는 유명하다. 박정희는 그가 주도하여 정비하고 발굴한 유물 유적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기 다음으로 주목할 시기는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에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건들이 있었다. 외규장각의

50 장호수, 2020, 앞의 논문, p.47.

51 국립중앙박물관, 2009,『한국 박물관 백년사 - 본문편』, p.893.

52 오세탁, 1997,「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문화재』30, p.6.

53 정갑영, 2016,「조국 근대화와 민족문화」『사회이론』50, p.16.

54 장호수, 2020, 앞의 논문, p.56.



궤 환수, 일제 잔재 청산 정책에 따른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화유산의 해 사업과 문화유산 현장 제정 등이다.

1993년 시작된 외규장각 의궤 환수는 문화재를 매개로 한 프랑스 고속철 사업과 한국 민족주의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평가⁵⁵한 것은 우리나라가 민족주의에 바탕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995년 첨탑 철거로 시작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당시 한국 사회에 문화재 보존에 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국내의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조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⁵⁶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문제 역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당시 해체한 첨탑을 독립기념관의 읊지 하단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이 건물 철거 행위 역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상징한다. 시각을 달리하면,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로 복원하게 될 경복궁은 현재와 다른 이념 체계를 가지는 봉건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 건물이었지만, 민족적 전통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재규정되었다.⁵⁷ 이것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과거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상징물까지 포섭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과 문화유산 현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자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 일이었다. 당시 정부 주도로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하고 각종 선양 사업을 한 것은 문화재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선포식 축

하 메세지에서 ‘값진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이며, 민족문화를 꽂피운 세종대왕의 탄신 600주년이 되는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였다.⁵⁸ 봉건적 이데올로기 시대의 대표적 인물 역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포섭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의 해 말미에 제정된 문화유산 현장은 문화재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된 예이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로 정의된다.⁵⁹ 다시 말해 국민들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념의 체계이다. 다음 문화유산 현장(일부 인용)은 이에 부합한다.

문화유산은...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거래사랑의 바탕이 된다. ...

1.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은...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은..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알리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친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20세기 마지막 기간은 문화재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며 문화재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문화재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된 시기이다. 국민교육현장이 국가 주도로 국민을 국가가 원하는

⁵⁵ 정상천, 2011,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 p.255.

⁵⁶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분사편』, p.376.

⁵⁷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 p.299. (De Ceuster K.,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Icons in the Seoul Landscap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3-2 (2000), 재인용).

⁵⁸ 문화재청, 2011, 앞의 책, p.422.

⁵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020.6.30.).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보급되었다⁶⁰는 언급을 고려하면, 문화유산 현장이 가지는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계몽주의적 성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맷음말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기억은 선별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자의 관점이 투영되는데, 선택자가 정치 권력이라면 정치 권력의 관점이 투영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역사의 증거물들 중에서 무엇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을지에 관한 선택은 당대 권력자의 몫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는 정치 권력의 선택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였고,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의 배경에는 개념과 사회의 상보적 관계,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배 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 집단에게 각인시키려 하는데, 전통 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재 인식에 관한 변화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강점 이전 10년 동안에는 유교사상에 기반하여 500여 년간 지배 문화를 형성한 대한제국이 있었고, 이 왕조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과거의 상징물들은 왕릉이나 왕실 기록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고적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고, 이에 대한 조사는 일본이 주도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러 계몽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재에 대한 주체적·근대적 인식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효적이지는 못했다.

일제강점 후 일본은 전국의 고적 조사를 보다 문화재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목록을 만들고 규정을 제정하였다. 1933년에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은 현재 문화재 관리 체계의 원형을 이루었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나 문화재 지정 및 보호·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 애호운동을 벌였으나,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 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 남과 북 모두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있었던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은 문화재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였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 과정에서 남과 북 각자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다시 문화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훼손된 문화재는 일부나마 복구·수리되었다.

남한에서 문화재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전통문화 강조를 정권의 정통성과 연계한 박정희 정부의 의도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문화재의 정비와 발굴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있었고, 이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 또한 민족주의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제정한 ‘문화유산 현장’은 문화재가 이데올로기 실현의 도구를 넘어 그 자체가 된 상징적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의 지배 권력 교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배 권력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재에 투영하였다. 왕권의 강조, 식민

60 곽민지, 2018,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보급(1968~1972)」『역사문제연구』40, p.410.



지배의 정당성, 민족주의의 발현과 같이 문화재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였고, 마지막에는 그 자체가 되기도 했다.

모든 사회 집단은 나름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당대에는 항상 최선의 이데올로기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선은 변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자체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변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연구 대상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탈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하지만 군함도의 세 계유산 등재와 같은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 논쟁의 배경에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화재 자체를 이루는 물질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단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의 극단적인 예는 일제강점기 대만에서 확인되었다. 국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 문화도 그만큼의 영향을 받고,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권력의 변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 부여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20세기 우리나라의 문화재 인식 변화는 문화재에 관한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근현대 사회의 문화재에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이다.

현재도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진행 형이며, 어쩌면 더욱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00년 넘게 이어진 일본의 영향을 일소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문화재의 주체적 정리와 활용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 문화의 의미를 근본에서부터 성찰하는 일과 이에 따라 과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백의민족’과 같은 명제가 근대시기에 소위 ‘만들어진 전통’이라면,⁶¹ 이와 관련된 일들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⁶¹ 최공호, 2010, 「소백색 한복의 정체성과 근대의 백색담론」『傳統,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이 글은 2020년 7월 11일 문화재청·한국미술사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시론’)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곽민지, 2018,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보급(1968~1972)」『역사문제연구』40
- 국립고궁박물관, 2020.6.19.,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 박물관 백년사 - 본문편』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사회과학연구』, 大邱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 김용간, 1958, 「문화 유물 조사 보존에 대한 조선 로동당의 시책」『문화유산』1호
- 김용철, 2017,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미술자료』92, 국립중앙박물관
- 金鐘洙, 2019,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忠南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韓國史專攻 博士學位論文
- 金志宣,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남보라, 2015, 『국가건설과정의 북한 문화유산 관리 연구 - 1945년~1956년을 중심으로』, 北韓大學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석사학위논문
- 남보라, 2019, 「북한문화재 보호법제 변화와 최신 동향」『2019년 남북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58, 『서울 명소고적』
- 심주아, 2016, 「이코모스 현장의 문화유산 개념 및 보존원칙의 변화와 그 의미 - 베니스 현장을 중심으로」, 韓國傳統文化大學校 文化遺產融合 大學院 修理復原學科 文化財復原專攻 碩士學位論文
- 吳世阜, 1982, 「文化財保護法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行政法專攻 博士學位論文
- 오세탁, 1997,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문화재』30
-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文化財』51-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오춘영, 2018,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文化財』51-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오춘영, 2019, 「개념사적 관점에서 본 '문화재(文化財)' 개념의 특성과 정의」, 『2019년도 호서사학회 전반기 학술대회』
- 오춘영, 2019, 「대한제국기 문화재 개념과 인식」『한국사연구회 제321차 월례연구발표회』, 한국사연구회
- 오춘영, 2020, 「韓國 近代 '文化財' 認識의 形成과 變容」,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현일·이명희, 2014,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美術資料』85, 국립중앙박물관
- 林會承, 2011, 『臺灣文化資產保存史綱』, 台北:遠流
- 정갑영, 2016, 「조국 근대화와 민족문화」『사회이론』50
- 정규홍, 2005,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역사교육』97
- 정상천, 2011,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한국정치외교사논총』33
-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 '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옮김, 2006,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10, 『傳統,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



Ideological Impacts and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20th Century

Chunyoung Oh Director,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adagio@korea.kr

Abstract

An assumption can be made that, as a start point for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choice” of such would reflect the cultural ideology of the ruling power at that time. This has finally been proved by the case of Korea in the 20th century.

First, in the late Korean Empire (1901-1910), the prevailing cultural ideology had been inherited from the Joseon Dynasty. The main objects that the Joseon Dynasty tried to protect were royal tombs and archives. During this time, an investigation by the Japanese into Korean historic sites began in earnest. Stung by this, enlightened intellectuals attempted to recognize them as constituting independent cultural heritage, but these attempts failed to be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1910-1945 Japanese occupation, the Japanese led investigations to institutionalize Korean cultural heritage, which formed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At that time,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designation,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ivities 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t only rationalized their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but also illustrated their colonial perspective. Korean nationalists processed the campaign for the love of historical remains on an enlightening level, but they had their limits in that the campaign had been based on the outcome of research plann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1945-2000 period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projects took places that were based on nationalist ideology. People intended to consolidate the regime’s legitimacy through these projects, and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Charter’ in 1997 represented an ideology in itself that stretched beyond a means of promoting nationalist ideology.

During the past 20 centuries, cultural heritage content changed depending on the whims of those with political power. Such choices reflected the cultural ideology that the powers at any given time held with regard to cultural heritage. In the background of this cultural heritage choice mechanism, there have been working trade-off relationships formed between terminology and society, as well as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memories. The ruling party has tried to implant their ideology on their subjects, and we could consider that it wanted to achieve this by being involved in collective memorie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 so called-choice,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Keywords Cultural heritage, Ideology, Recognition, Collective memory, 20th Century

Received 2020. 08. 13 • Revised 2020. 10. 17 • Accepted 2020. 11. 06

